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번호	2024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1. 13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(안 제1조)
- 나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, 존속기한 및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  
(안 제2조~제5조)
- 다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(안 제6조, 안 제8조~제9조)
- 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)
- 마. 통합계정 예탁 및 용자(안 제10조~제1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
  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0. 10. 16. ~ 2020. 11. 5.) 결과 : 별도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
3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

4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통합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 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

**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1.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3.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5.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 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**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(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제8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회계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통합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: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

2. 통합기금출납원: 통합기금 담당자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)**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(이하 “예탁부서”라 한다)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금 예탁 시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③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탁금을 제2항의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,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.

**제11조(예탁금 증서 교부)**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통합기금의 용자)** ① 통합기금의 용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한 다른 회계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.

1. 용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
2. 재무구조 건전성
3. 상환 가능성

③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7조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,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용자기간)**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용자하는 경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**제14조(용자신청 등)**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용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용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부서(이하 “용자부서”라 한다)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용자금의 원금 상환)**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자 약정 시 결정한다.

② 용자부서에서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 연체 대출



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③ 용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, 이자,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.

④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, 연체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(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)을 상환일로 한다.

**제16조(기간의 계산)** ①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용자한 날을 포함하며, 예탁금 및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**제3조(재원 이체)**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
[별지 제1호서식]

# 예탁신청서

(제10조제1항 관련)

신청부서	
사업명	
예탁기간	
예탁금액	금 원(금 원)
<p>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부서장 : (인)</p> <p>금천구 통합기금운용관 귀하</p>	
첨부서류	사업계획서 1부





# 용 자 약 정 서

(제14조제1항 관련)

○○○○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 계정) 운용계획에 계상된 용자금의 금천구 ○○회계 또는 ○○기금에 용자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금천구 통합기금운용관과 ○○○○(이하 “용자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용자약정을 체결한다.

**제1조(용자금액)**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용자부서의 장에게 용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.

1. 용자금액: 금100,000,000원(금 일억원)
2. 용     도:

② 용자금은 실제 용자된 금액으로 하며, 용자금 교부일자에 용자된 것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자금의 원리금 상환)** ① 용자부서의 장은 용자금의 원금을     년 월     일에 상환한다.

② 용자금의 이자(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)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③ 원리금 상환방법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
④ 용자부서의 장이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상환의무)** 용자부서의 장은 용자금의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용자금의 용도)** 용자부서의 장은 용자금을 제1조제1항제2호의 용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은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**제5조(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)** ① 용자부서의 장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관련 서류
2. 사업계획 진행상황
3. 용자금 운용상황
4. 그 밖에 통합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

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용자부서의 장에게 용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6조(약정불이행 시의 조치)** 용자부서의 장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합기금운용관은 용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, 그 용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.

**제7조(해석)**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8조(효력발생과 종료)** 이 계약의 효력은 용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용자부서의 장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.

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용자부서의 장은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금천구 통합기금운용관	<input type="text" value="직인"/>	○	○	○	(인)
용자부서의 장	과장	○	○	○	(인)

# 용 자 신 청 서

(제14조제2항 관련)

신청부서	(회계 및 기금명)
사업명	
사업개요	
신청금액	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 (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
용자금 상환계획	
<p>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>금천구 통합기금운용관 귀하</p>	
첨부서류	사업계획서 1부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**제4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

**제5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1.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
3.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
4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황
5.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
## 2. 비용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5년 (기금존속기한)
  - 결산확정에 의해 세입추계가 가능하므로 최근 3년 결산 기준으로 추계하고 2021년도 결산 시 정확한 결산금액 반영
  - 통합계정은 추후 설치예정이며 재정안정화계정 설치·운영예정
- ※ 세출 발생요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세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전제

### 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합계
세입	일반회계 전입금	1,893	-	-	-	-	
	소계(a)	1,893	-	-	-	-	
세출	예치금	1,893	-	-	-	-	
	소계(b)	1,893	-	-	-	-	
□총 비용(a-b)		-	-	-	-	-	-

### 다. 재원조달 방안 : 전액 구비

## 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 년도	2차 년도	3차 년도	4차 년도	5차 년도	계
구비	1,893	-	-	-	-	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예산과 오경민
연 락 처	02-2627 - 1094

# 관계법령

## 지방재정법

-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 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 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